



고용노동부

대한민국 대전환

한국판뉴딜

고용노동부

산업보건기준과

과장

김정연

044-202-8870

044-202-8872

고용노동부

근로감독기획과

과장

이민재

044-202-7553

044-202-7528

고용노동부

직업건강증진팀

팀장

김진숙

044-202-8890

044-202-8892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「야간근로 사업장」 대상 근로감독·실태조사 결과 발표

- ◇ 감독 대상 51개소 중 17개소에서 「특수건강진단 미 실시」 확인
- ◇ 도매업, 운수·창고업에서 「휴게시간 미 준수 등」 적발
- ◇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, 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 마련 등 적극 추진

-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11.24.(수) 야간근로를 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
 - 이번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시장이 대폭 확대되고 있어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추진한 것이다.
- 이번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도매업(유통업), 운수·창고업과 상시적으로 야간근로를 하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.

* (대상) 3개 업종 51개소【원청 30개소(업종별 각 10개소), 하청 21개소】

- ↳ ▲ (도·소매업) 상품을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 등
- ▲ (운수·창고업) 화물 운송 또는 상품을 보관하는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업종 등
- ▲ (제조업) 자동차 부품, 기계 부품, 화학 소재 등을 생산하는 업종 등

- 이는 야간작업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실시 노동자가 많으면서 뇌심혈관질환 산재 사고가 많은 업종을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다.

- 근로감독 부문은 산업안전·근로기준 합동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, 휴게시설 설치·운영 및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 관련된 사업주 조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고,

- 실태조사 부문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서 실제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했다.

* 실태조사 대상 노동자 10,426명 중 8,058명 응답

① [근로감독]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확인

- 산업안전 분야는 감독 대상 51개소 중 27개 사업장에서 총 8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,
 - 특히,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관리에 중요한 수단인 특수건강진단, 휴게시설 관련 법 위반사항이 일부 확인되었다.

① [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미 실시] 과태료(5,100만원) 부과

- 일정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에도 감독 대상 51개소 중 17개소에서 일부 노동자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.

*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(특수건강진단): 벌칙(1천만원 이하 과태료, 미 실시 1인당 10만원)

*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

- ↳ ▲ 6개월간 0시~오전 5시 시간을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
- ▲ 6개월간 22시~오전 6시 사이의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

- 특히,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도매업(유통업)과 운수·창고업에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.

② [휴게시설 미설치 등] 휴게시설 설치 시정지시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지도

- 대부분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, 감독 대상 51개소 중 3개소(제조업 2개소, 운수·창고업 1개소)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시정지시를 했으며,

*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(사업주 등의 의무): 벌칙 규정 없음(현행)

- 도매업(유통업)과 운수·창고업 일부 사업장은 휴게시설은 설치되었으나, 남녀를 고려하지 않거나, 비품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휴게시설 운영이 미흡하여 개선하도록 지도했다.

- 이외에도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금연, 고혈압 관리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.

④ [안전보건 교육 미실시] 과태료(4,900만원) 부과 및 교육 실시 지도

- 근로감독 대상 중 15개소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,

*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

- ↳ ▲ (정기교육채용시 교육 미실시) 5백만원 이하 과태료 (미실시 1인당 10만원)
- ▲ (유해·위험작업 특별교육 미실시) 3천만원 이하 과태료 (미실시 1인당 50만원)

- 수면 장애, 뇌심혈관질환 등 야간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했다.

- 근로기준 분야는 감독 대상 51개소 중 43개 사업장에서 총 9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.

- 특히, 도매업(유통업), 운수·창고업에서 휴식시간 미준수 등 야간 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 관련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.

① [휴게시간 미준수 등] 도매업, 운수·창고업에서 법 위반 확인

- 감독 대상 51개소 중 도매업(유통업), 운수·창고업 4개소에서는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으며,

* 근로기준법 54조(휴게) 제1항 위반: 벌칙(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)

-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운수·창고업 6개소에서는 일부 노동자에 대해 11시간 연속해서 휴식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다.

* 근로기준법 제59조(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): 벌칙(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)

- ↳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함

② [연장수당 미지급 등] 연장·휴일수당 미지급, 기초노동질서 위반

- 감독 대상 중 9개소(도매업 6개소, 운수·창고업 2개소, 제조업 1개소)는 연장·휴일근로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,

* 근로기준법 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 위반: 벌칙(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)

- 감독 대상 중 6개소(제조업 5개소, 도매업 1개소)에서는 일부 노동자에 대해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.

* 근로기준법 53조(연장근로 제한) 위반: 벌칙(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)

- 이외에 임금체불, 최저임금 미지급,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총 70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었다.

② [실태조사]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휴식시설 확충, 충분한 휴식부여 등 필요

-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현황, 휴식시설·시간* 현황, 특수건강진단 현황,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내용 등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.

* 근로기준법,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「휴게시설», 「휴게시간」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 편의를 위해 「휴식시설», 「휴식시간」 용어 사용

① [야간근로 형태] 제조업은 교대근무 비중이 월등히 높고, 도매업과 운수·창고업은 야간근무 전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

- 야간근로 형태는 교대근무가 64.8%, 야간근무 전담이 35.2%로 나타났고,
 -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교대근무가 99.3%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, 도매업(유통업)과 운수·창고업은 야간근무 전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
* (교대근무) ▲도매업 (29.8%), ▲운수·창고업 (54.9%), ▲제조업 (99.3%)

* (야간근무 전담) ▲도매업 (70.2%), ▲운수·창고업 (45.1%), ▲제조업 (0.7%)

② [휴식시설·휴식시간] 도매업, 운수·창고업에서 휴식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

- 휴식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응답이 78.8%로 다수이고, 부족하다는 응답은 21.2%로 나타났다.

- 업종별로는 도매업(유통업)과 운수·창고업에서 휴식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
* (휴식시설 부족) ▲도매업 (30%), ▲운수·창고업 (26.1%), ▲제조업 (9.8%)

- 1일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미만 응답이 61.5%로 다수이고, 8시간 이상은 38.5%로 응답했다.

- 1일 야간근로 중 휴식시간은 1시간 이상이 56.6%,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3.3%로 나타났다.

* (1시간 미만 사용) ▲도매업 (64.1%), ▲운수·창고업 (43.7%), ▲제조업 (29%)

③ [특수건강진단] 도매업, 운수·창고업에서 특수건강진단 미 실시 비중이 높음

- 특수건강진단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‘안다’는 응답이 90.4%로 다수이고, ‘모른다’는 응답이 9.6%로 나타났다,

-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‘받았다’는 응답이 89.1%, ‘받지 않았다’ 응답이 10.9%로 나타났다.

* 특수건강진단 미 실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

- 업종별로는 도매업(유통업)과 운수·창고업에서 특수건강진단을 ‘받지 않았다’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.

* (특수건강진단 미수검) ▲도매업 (16.5%), ▲운수·창고업 (11.6%), ▲제조업 (6.5%)

④ [야간근로를 하는 이유] 경제적 이유, 교대제 등 근무체제 응답이 높음

-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는 ‘수당 등 경제적 이유’가 55.8%로 다수이고, 그 외에는 ‘교대제 등 근무체제’, ‘개인적 생활여건’ 순으로 응답했다.

- 업종별로는 도매업(유통업), 운수·창고업은 ‘수당 등 경제적 이유’ 응답이 높고, 제조업은 ‘교대제 등 근무체제’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.

⑤ [야간근무자가 요청하는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] 휴식시설 확충,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필요

- 야간근무를 하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회사의 조치가 ‘있다’는 응답은 59.5%이고, ‘없다’는 응답은 40.5%로 나타났다.

- 또한,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휴식시설 확충,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.

③ [후속조치] 지속적인 교육·점검, 심층건강진단 지원, 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 마련 등 추진

-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,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,

- 야간근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.

- 이와 함께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에게 정밀검사가 포함된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「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」에 참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.

* (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)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사가 포함된 뇌심혈관계 중심의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

↳ ▲ 심층건강진단: 194,000원(검진비용 80%), ▲ 건강상담: 회당 2만원(1인당 최대 5회)

-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,

- “야간근로는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고 하면서,

- “기업에서는 휴게시설 개선,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,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”라고 당부했다.

- “정부도 야간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·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,

- 또한,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로 상항됨에 따라 「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」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< 참고: 휴게시설 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전·후 비교 >

구 분	현 행	개 정('21.8월 개정, '22.8월 시행)
휴게시설 의무 규정 법령	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(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위임)	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
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	사업장 휴게시설 설치·운영 가이드 ('18.7월)	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설치 및 관리 기준 규정
벌칙 사항	없음	- 휴게시설 미설치 : 1,500만원 이하 과태료 * 법령상 과태료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 - 휴게시설 설치·관리 기준 미준수: 1,000만원 이하 과태료

참고 1

「야간근로 실태조사」 결과 주요내용

문의처: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 서기관(044-202-7528)
산업보건기준과 김 원 사무관(044-202-8872)

실태조사 개요

❖ (조사 대상) 3개 업종【도매업(유통업), 운수·창고업(물류업), 제조업】 51개소 (원청 30개소, 하청 21개소)에서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 대상 실시

<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 현황 >

구 분	합 계	도매업	운수·창고업	제조업
합 계	51	20	21	10
원 청	30	10	10	10
하 청	21	10	11	-

○ 조사 대상 노동자(10,426명) 중 8,058명 응답 (응답률 77.3%)

< 실태조사 대상 노동자 현황 >

구 분		응답자 수 (명)	비중 (%)
업종별	도매업(유통업)	1,962	24.3
	운수·창고업(물류업)	3,188	39.6
	제조업	2,908	36.1

❖ (조사 내용) 야간근로시간·휴식시간 등 야간근로 현황, 특수건강진단 현황,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내용 등

❖ (조사 방법) 모바일을 활용한 익명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

1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

- (근로형태) 야간근로 형태는 교대근무(64.8%), 야간근무 전담(35.2%)
* (교대근무) ▲도매업 (29.8%), ▲운수·창고업 (54.9%), ▲제조업 (99.3%)
* (야간근무 전담) ▲도매업 (70.2%), ▲운수·창고업 (45.1%), ▲제조업 (0.7%)
- (1주 근무일·시간) 근무일은 5일(65.9%), 근무시간은 40~52시간(75.3%)

2 야간근로 현황

- (야간근로) 1일 평균 8시간 미만 야간근로가 전체 61.5%, 주로 근무하는 시간대는 22~24시(85%), 00~02시(80.4%)가 많음
* (야간근로시간) ▲ 4H 미만(11.1%), ▲ 4~6H(11.5%), ▲ 6~8H(38.8%), ▲ 8H 이상(38.5%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김원 사무관(☎044-202-8872),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 서기관(☎044-202-7528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**(휴식시설)**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(78.8%), 부족함(21.2%)
 - * (업종별) 「휴식시설 부족」은 도매업(30%), 운수·창고업(26.1%)이 제조업(9.8%)보다 높음
- **(휴식시간)** 야간근로 중 휴식시간 1시간 미만(43.3%) 1시간 이상(56.6%)
 - * (업종별) 「1시간 미만 사용」은 도매업(64.1%), 운수·창고업(43.7%)이 상대적으로 높음
 - **(휴식시간 사용)** 자유롭게 사용(87.3%), 자유롭게 미사용(12.7%)
 - * (업종별) 「자유롭게 미사용」은 도매업(16.7%), 운수·창고업(18.2%)이 높음
 - **(미사용 사유)** 업무량 과다(46.1%), 휴식시설 부족(36.7%), 성과 부담(20.8%)
 - * (업종별) 「업무량 과다」는 도매업(62.4%)이 높음

③ 야간근로 특수건강 진단

- **(특수건강진단 인지)** 알고 있다(90.4%), 모른다(9.6%)
- **(특수건강진단 실시)** 받은 사실이 있다(89.1%), 받지 않았다(10.9%)
 - * (업종별) 「받지 않았다」 응답은 도매업(16.5%), 운수·창고업(11.6%)이 높음
 - **(진단 결과)** 정상 판정(97.3%), 정상 판정 아님(2.7%)
 - * 정상이 아닌 경우 회사 조치는 건강상담 및 추적검사(61.3%), 조치 없음(18.6%) 순
 - **(미실시 사유)** 모르겠음(45.7%), 근로시간이 진단 비대상에 해당(19.3%) 등

④ 야간근로 이유

- **(야간근로 이유)** 경제적 이유(55.8%), 회사 근무체계(53%) 응답이 높음
 - * (업종별) 도매업, 운수·창고업은 경제적 이유, 제조업은 회사 근무체계 응답이 높음
 - * (고용형태별) 일용직은 경제적 이유, 정규직·계약직은 회사 근무체계 응답이 높음

⑤ 야간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

- **(직원 건강보호를 위한 회사 조치)** 있음(59.5%), 없음(40.5%)
 - **(조치 내용)** 야간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설명(51.9%), 휴식시간 부여(47%), 휴식시설 확충(43.6%) 순
- **(건강에 미치는 영향 감소방안)** 휴식부여(52.0%), 휴식시설 확충(45.7%) 등

참고 2 「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제도」 개요

문의처: 산업보건기준과 김원 사무관 (044-202-8872)

□ 특수건강진단 개요

- **(개요)** 벤젠 등 건강장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 181종에 노출되는 근로자*에 대해 사업주는 주기적(6~24개월)으로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별 검진을 실시할 의무
 - * 고용형태(상용직, 일용직)에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
- **(관련 규정)**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등

□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

- **(개요)** '13. 8월부터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유해인자에 "6개월동안 일정 시간 이상 수행한 야간작업*"이 포함
 - * '07년 국제암연구소(IARC)는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2군 발암물질로 지정
- **특수건강진단 대상 야간작업** 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
 - ①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
 - ②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

○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현황 ('15~'19년)

(단위: 명)

구 분	2015	2016	2017	2018	2019
수검자	784,549	1,015,965	1,049,195	1,085,856	1,147,622

참고 3

「심층 건강진단 지원사업」 개요

문의처: 직업건강증진팀 손종원 사무관 (044-202-8892)

- (심층건강진단 개요)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에게 정밀검사가 포함된 뇌심혈관계 중심의 건강진단 지원
- (지원 대상)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있는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로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

① 기존 건강진단결과(일반·특검 등)에서 뇌·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(단, 5,6번 항목은 반드시 1~4번 항목 1개 이상 포함)	
◆ 뇌·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	
①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	⑤ 연령(남 만45세 이상, 여 만55세 이상)
② 공복혈당 126mg/dL 이상	⑥ 흡연
③ 총콜레스테롤≥240mg/dL 또는 LDL≥160mg/dL 또는 중성지방≥200mg/dL	
④ 비만(BMI≥30) 또는 복부비만(남≥90cm, 여≥85cm)	

② 뇌·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
③ 일반검진결과(국가검진)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% 이상인자
④ 공단운영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

- (검사 항목) 뇌심혈관질환 위험인자와 뇌심혈관 정밀검사항목 중심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수준을 평가

구분	기초검사(3)	혈액검사(7)	소변검사(2)	뇌심혈관 정밀검사(4)
검사 항목	① 문진 ② 신체계측(키, 몸무게, 비만도, 허리둘레) ③ 혈압측정	① 당화혈색소(HbA1c) ② 총콜레스테롤 ③ HDL콜레스테롤 ④ 트리글리세라이드 ⑤ LDL콜레스테롤 ⑥ 혈청 크레아티닌 ⑦ 신사구체여과율(e-GFR)	① 요단백 ② 미량알부민	① 심장초음파 ② 심전도 ③ 경동맥 초음파 ④ 관상동맥 CT(비조영)

□ 지원 금액

- (심층건강진단) 194,400원(검진비용의 80%)

* 상기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비용은 243,000원으로 194,400원(80%)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직접 지급하고 자부담금 48,600원(20%)은 신청인이 건강진단기관에 지불

- (건강상담지원) 회당 20,000원(1인당 최대 5회까지 지원)

* 건강진단결과, 건강 이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의 상담시 안전보건공단이 검진기관에 지급(건강상담 이외에 개인질환 치료, 처방,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 비용지원 불가)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①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: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메인화면에서
① (바로가기) 자주 찾는 항목 “뇌·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” 클릭 또는
② (신청경로) “사업안내-재정지원-뇌·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” 클릭
☞ 신청자: 사업주 또는 노동자 모두 신청 가능(단, 개인정보 제공·활용동의 필수)
- ② 검진 이용권 송부 : 접수·승인 후 검진희망자의 개인 휴대폰으로 건강진단 이용권 송부
- ③ 검진일정 예약 : 희망 검진기관과 검진일정 예약(1개월 이내 검진실시)
- ④ 심층건강진단 실시 : 검진 예정일에 방문하여 건강진단 실시
- ⑤ 비용지급 : 검진기관이 공단에 비용청구 후 공단지원금을 검진기관으로 지급
※ 자부담금은 건강진단일에 현장 납부(사업주가 일괄 납부하는 경우 검진기관과 별도 협의 필요)
- ⑥ 사후관리 : 검진결과, 뇌·심혈관 위험이 높은 자는 공단 운영 근로자건강센터(전국 23개소)와 연계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지원

□ 심층건강진단 실시

-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건강진단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실시(방문전 예약)

지역	검진기관명	연락처	지역	검진기관명	연락처
서울	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	02-2038-6115	전북	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40	063-259-8800
서울	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	02-2140-6010	대전	씨엘아이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	042-601-9641
서울	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78	02-3290-9800	대전	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계동로 611	042-530-2100
서울	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35	02-2600-2005	대구	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 23	053-341-9010
서울	서울DMC건강의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79	070-5138-5532	대구	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동구 장동로 16	053-757-0500
경기	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	031-250-5800	경북	구미강동병원 구미시 인동20길 46	054-478-9591
경기	의료법인 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90번길 98	031-8021-6947	부산	동아대학교의료원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	051-240-5310
경기	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	031-980-9114	부산	이샘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12	051-631-5225
인천	나은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신중구 인항로 27	032-890-2861	부산	영도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	051-419-7757
인천	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	032-890-2861	부산	좋은강안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	051-610-9993
인천	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매로 500	032-890-8700	부산	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45	051-553-9701
인천	현대유비스병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매로 503	032-890-5713	울산	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울산광역시 중구 변영로 360	052-296-5671
강원	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지부 춘천시 남촌로 50	033-260-0800	경남	경희의료원교육협력 중앙병원 김해시 분성로 94-8	055-330-6087
강원	속초초광병원 속초시 중앙로 11	033-639-8904	경남	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	055-360-1280
광주	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32	062-610-3147	제주	의료법인 해인의료재단 한국병원 제주시 서광로 193	064-750-0000